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-161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11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평생교육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 및 기능 등 정비

(안 제2조1항, 안 제2조2항, 안 제10조, 안 제13조)

나. 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지정 운영 의무화(안 제9조3항)

다. 개정에 따른 띄어쓰기 수정 등 조문 정비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(정의)
- 2) 「평생교육법」 제21조(시·군·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·운영 등)
- 3) 「평생교육법」 제21조의3(읍·면·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)
- 4) 「평생교육법」 제26조(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)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4. 8. 29. ~ 9. 18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- 5) 제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(2024. 11. 6.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의 제목 “총 칙”을 “총칙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문자해득교육, 직업능력”을 “문해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성인 진로개발역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연구·정책개발·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”를 “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,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·훈련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근거리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호를 제10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

8.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동별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

9. 평생교육에 관한 평생학습 축제 및 문화행사

제12조제1항 중 “운영비와 학습경비”를 “필요한 경비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본문 중 “위하여 소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 약간 명”을 “위해 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소장과 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교육정책과장”을 “소관 업무 부서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평생학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”를  
“평생학습센터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장 총 칙	제1장 총칙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평생교육”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 문자해득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	1. ----- ----- -- <u>문해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성인 진로개발역량</u> ----- ----- ----- --.
2. “평생학습센터”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·정책개발·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.	2. ----- --- <u>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,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·훈련</u> ----- ----- -.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9조(설치)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센터(이하 “평생학습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 다만, 근거리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단위로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	제9조(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<후단 삭제>

② (생략)

<신설>

제10조(기능)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

2. ~ 5. (생략)

6. 평생교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7. (생략)

제12조(보조금 등 지원) ① 구청장은 법 제5조 및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참여자 와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 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3조(운영요원 등)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근거리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제10조(기능) -----  
-----.

<삭제>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7.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

8.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동별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

9. 평생교육에 관한 평생학습 축제 및 문화행사

10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제12조(보조금 등 지원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필요한 경비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운영요원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위해 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

약간 명을 들 수 있다. 다만, 구 재  
정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정책과장  
에게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 
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4조(수강료 징수 등) ① 구청장은  
평생학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  
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  
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치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소  
장과 직원---. ----- 소관 업  
무 부서장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수강료 징수 등) ① -----  
- 평생학습센터 -----  
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지원국 교육정책과 이수아
연 락 처	02-3153-8972